

제75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시 · 도별 지방소비 세액	=	제75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시 · 도별 지방소비 세액
		=
안분액 중 시 · 도 안분액의 합계액	×	시 · 도의 해당 소비지수 × 해당 시 · 도의 가중치 각 시 ·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

나. 각 시 · 도 교육청의 안분기

준: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 · 도별 지방소비세액
을 기준으로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,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

5. · 6. (생략)

<신설>

5. ·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
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
시 · 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
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 및
제29조의2에 따른 시 · 군 및 자
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
른 산정을 말한다. 이 경우 세종
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